

2026년 소상공인 디자인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용인시와 용인시산업진흥원에서는 관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026년도 소상공인 디자인 지원사업을 실시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2026년 3월 3일
용인시산업진흥원장

1 사업개요

- 사업명:** 2026년 용인시 소상공인 디자인 지원사업
- 사업목적:** 로고, 홍보물, 웹, 모바일페이지 등 소상공인 디자인 제작 지원
- 사업기간:** 2026. 3. ~ 9.
- 지원대상:** 용인시 관내 소상공인(관내에서 2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한 사업자)

*소상공인의 범위

1.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10명 미만
 2. 위 업종 외: 5명 미만(도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서비스업 등)
- * 회사가 아닌 업체와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으로서 자본금 1천만원 이하의 사회적경제기업인 협동조합법인은 포함

- 지원규모:** 47개소 내외
- 신청기간:** 2026. 3. 3.(화) ~ 3. 20.(금) 17:00
- 지원내용**
 - 소상공인당 최대 200만원 이내 직접 지원(단, 부가가치세 및 수수료 등 제외)
 - * 지원기업은 총 소요비용의 10% 이상 현금 매칭 필수
 - * 예시) 총 사업비 223만원(지원금 200만원+기업부담금 23만원) 이상 집행 시, 지원금 200만원 지급
 - 총 지원한도 내에서 지원분야 중복신청 가능(예시: 디자인+홍보물 제작)

- 신청 소상공인은 대행업체(외주)를 자율적으로 선정한 후, 본 사업에 신청
 ※ 최소 2개 업체 이상의 견적을 받아 실제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첨부 필요

구분	세부지원분야
홍보 디자인	- 브랜드 로고(CI, BI) 디자인, 고정·설치형 메뉴판 등의 홍보물 디자인 등
홍보물 제작	- 지물로 인쇄되는 홍보물 제작* * 카탈로그(국문·해외), 브로셔, 전단지, 리플렛, 상품 포장(패키지) 등
홍보 영상 제작	- 동영상 제작* * 소상공인 및 제품 홍보 동영상
홍보용 웹페이지 제작	- 상시 전시되는 디지털 웹기반 홍보물 제작 ·PC, 모바일 홈페이지 제작 등 ※ 단, 호스팅·도메인 등 유지보수(제작 외 비용)만을 위한 비용은 지원 불가

2 지원 제외대상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업체
-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참여 제한 중인 사업자 또는 개인
- 기업의 부도, 휴·폐업 중인 경우
- 사업 참여를 위해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 기업이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용인시 및 진흥원이 고시한 사업 지원 제외 업종(사행산업 등)
- 진흥원이나 유관기관 등으로부터 동일·유사 사업으로 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 당해년도 용인시 소상공인 지원사업 수혜자 및 직전 2개년 용인시 소상공인 디자인 지원사업 수혜자
-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및 가맹점
- 전년도 매출이 없는 사업자
-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영위 기업
- 기타 관련 법령, 신청 자격 등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 사업 선정 시 향후 2026년 용인시 소상공인 지원사업(온라인 플랫폼 지원, 재도약 경영환경 개선 지원)과 중복 신청 불가

3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026. 3. 3.(화) ~ 3. 20.(금) 17:00

- ※ 접속이 물리거나 기타 사유 등으로 사이트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신청하는 것을 권장하며, 사이트 오류 및 기타 사유로 마감시간 내 신청하지 못할 경우 인정되지 않음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용인기업지원시스템/ybs.ypa.or.kr)

○ 용인기업지원시스템 지원사업 신청

- ※ 모든 신청기업은 용인기업지원시스템 내 회원가입 및 기업정보 사전등록 필수
- ※ 접수처 외 메일, 오프라인 등의 제출은 불인정

○ 접수방법 : 용인기업지원시스템(ybs.ypa.or.kr)에서 회원가입 → 기업지원(상단메뉴) → 지원사업공고 → 2026년 소상공인 디자인 지원사업 → 신청서 작성

○ 안내된 신청서류(첨부파일)를 작성하여 기타 제출서류와 함께 기업지원시스템 내 업로드 제출(모든 서류는 PDF, 한글파일 모두 제출)

- ※ **선정평가 전 미비서류 발생 시 기업에 보완 요청할 수 있음(서류 미비시 선정평가 제외)**

□ 문의처

- 판로지원팀 / 031-323-4694 / bcjeon@ypa.or.kr

4

선정방법 및 지원금 지급

□ 선정방법

- 서류검토: 신청서 및 사업수행계획서, 기타서류 등 검토

○ 선정평가

- 기업 선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외부 평가위원 5인 선정
- 평가위원의 5인의 서면평가 실시(평가위원별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점수의 산술평균)
-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결과 70점 이상 소상공인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
- 미선정 기업 중 평가결과 70점 이상인 소상공인은 고득점 순으로 예비기업 선정

- 현장실사: 현장실사를 통한 사업장 소재지 및 제품 등 확인 후 최종 선정 통보

□ **평가기준표**

○ **선정평가**

적격여부 확인								
대항목		확인사항						
신청자격	소상공인범위	<input type="checkbox"/> 도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서비스업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input type="checkbox"/>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사업소재지	<input type="checkbox"/> 용인시에 2개월 이상 사업자등록한 사업체						
지원제외업종		• 신청제한 업종(붙임1의 사업 지원 대상 업종)이 아님						
모집제외대상		• 정부·지자체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참여 제한 중인 사업자 또는 개인 • 기업의 부도, 휴·폐업 중인 경우 • 사업 참여를 위해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 기업이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영위 기업 • 진흥원이나 유관기관 등으로부터 동일·유사 사업으로 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 당해년도 용인시 소상공인 지원사업 수혜자 및 직전 2개년 용인시 소상공인 디자인 지원사업 수혜자 •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및 가맹점 • 전년도 매출이 없는 사업자 • 기타 관련 법령, 신청 자격 등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점					평가점수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정성평가 (50)	사업계획	사업계획의 적정성	10	8	6	4	2	
	지원내용	지원의 필요성 및 명확성	10	8	6	4	2	
	수행의지	대표자의 추진의지	10	8	6	4	2	
	소요비용	소요기간 및 비용의 적정성	10	8	6	4	2	
	기대효과	예상 성과(매출, 고용, 인지도 등)	10	8	6	4	2	
정량평가 (50)	매출현황	최근 1년 매출액	25	23	21	19	17	
		(기준액 = 신청자의 평균 매출액)	-20%이하	-10%이하	0%이하	10%이하	20%이하	
정량평가 (50)	업력	소상공인 사업영위연도 (사업자등록증상 기업업력)	25	23	21	19	17	
			5년이상 ~	3년이상 ~ 5년미만	2년이상 ~ 3년미만	1년이상 ~ 2년미만	1년미만	
소계	100점							
가점	최대1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인시 거주자 (1점, 주민등록초본 제출, 사업공고마감일 기준) ■ 임차인 (1점, 임대차 계약서 제출) ■ 지역화폐 가맹점 (1점, 용인시 민생경제과 확인) ■ 착한가격업소 (2점, 용인시 민생경제과 확인) ■ 백년소상공인(2점, 용인시 민생경제과 확인) ■ 다자녀가정(2자녀이상) (1점,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사업공고마감일 기준) ■ 국가보훈대상자, 기초수급자, 장애인 (2점, 증빙서류 제출, 중복 불인정) 						
합계	최대 110점	<선정기준> 선정위원회 평가 결과 합계 평균 점수 고득점자 순서대로 선정 * 동점자처리 : 정량평가, 정성평가, 개업일 순으로 선정자 결정					<input type="checkbox"/> 선정 / <input type="checkbox"/> 탈락	

□ 지원금 지급

- 지급방법: 후지급(100%)
 - 사업 수행 후, 완료평가 결과가 '적정(70점 이상)'일 경우 지원금 지급
 - 완료평가가 결과가 '실패(60점 미만)' 이거나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지원금이 지급 되지 않음
 - 완료평가 및 지출 증빙서류 검토 후 불인정 금액이 발생할 수 있음
- 지급처: 소상공인에 직접 지급
- 지급조건: 사업계획서 내 기재된 항목 외에 비용은 지원 불가

5 추진일정

□ 추진절차 및 일정



※ 상기 일정은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유의사항

- 신청 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을 할 수 있음
- 신청서 및 제출 서류의 내용이 허위 또는 거짓으로 판명되거나, 기한 내 협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중복지원 및 참여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 선정 취소
 - ※ 진흥원 및 유관기관 등 확인 절차를 통하여 신청기업의 중복수혜 여부 판단
- 해당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내용은 진흥원 지침 및 안내사항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신청 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를 요청 또는 현장 방문할 수 있으며, 신청기업은 이에 응할 의무가 있음
- 선정평가를 통해 지원범위 등이 조정될 수 있음
- 모든 서류는 PDF 파일 및 한글파일도 함께 제출
- 지원기업으로 선정되었더라도 지원사업 관리지침 및 기타 제반사항의 위반내용이 발견될 경우 사업 중단

No	구비서류	부수	발급처	비고
1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1부	진흥원 양식	- 첨부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양식 작성 후 PDF 파일, 한글파일 모두 제출
2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국세청 홈택스, 관할세무서	- 사업자등록증 1부(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 사업자등록증(기 발급본)
3	4대보험 가입자명부 또는 중소기업확인서 (소상공인확인서)	1부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4대보험 가입자명부: 1개월 이내 발급분 ※ 직원이 없고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이 어려울 경우, 사업장 관리번호 찾기(사업장명, 미성립 여부, 현재날짜 포함) 캡처본으로 대체 가능
4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또는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1부	국세청 홈택스, 정부24	- 공고일 기준 발급 유효한 서류(유효기간 확인 必)
5	개인정보이용 및 제공 동의서, 약약서	각 1부	진흥원 양식	- 신청서에 개인정보를 입력한 모든 인원 서명 필수 (대표자, 담당자 모두 서명하여 PDF 파일로 제출) - 첨부된 양식 작성 후 PDF 파일로 제출
6	대행업체 사업자등록증 및 견적서	각 1부	대행업체 (2개 업체 이상)	- 대행업체 사업자등록증 - 대행업체 견적서
7	해당시 기타 가점 증빙서류	각 1부	-	- 용인시 거주자(주민등록초본 제출) (+1점) - 임차인(임대차 계약서 제출) (+1점) - 다자녀가정 2자녀이상(가족관계증명서 제출) (+1점) - 국가보훈, 기초수급자, 장애인(관련 증빙서류 제출) (+2점)

□ 제출 서류 발급처

구분	서류명	발급처
사업자 확인	○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사업자등록증	관할세무서 또는 국세청홈택스(국번없이 126) (www.hometax.go.kr)
소상공인 확인 (상시근로자 확인)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
	○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확인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minfo.mss.go.kr/)
	○ 사업장 관리번호 찾기 캡처본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4insure.or.kr)
전년도 매출 확인	○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정부24 (www.gov.kr)
	○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홈택스 (http://www.hometax.go.kr)
작성 서류	○ 소상공인 디자인 지원사업 신청서 ○ 디자인 활용 방안 계획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진흥원 양식

별첨1

2026년 진흥원 지원사업 안내문

1

2026년 지원사업 공고 목록

NO	지원분야	사업명	담당부서
1	기술지원	품목지정형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R&D 지원	전략산업팀
2		기계·설비 성능평가 및 기술지도 지원	
3		용인특례시 반도체기업 기술보호 지원	
4	마케팅· 판로지원	온라인 플랫폼 입점 지원	판로지원팀
5		마케팅 지원	
6		해외지사화 지원	
7		해외물류비 지원	
8		수출 대행 서비스 지원	
9		해외플랫폼 입점 지원	
10		소상공인 디자인 지원	
11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온/오프 마케팅 지원	인프라지원팀
12	사업화 지원	인증·지식재산 지원	사업화지원
13		용인IP지원센터(IP전략)	
14		시제품 제작 지원	
15		디지털 전환 지원	
16		기술가치평가 지원	
17		첨단기술 융복합 실증 지원	전략산업팀
18	반도체 소·부장 기술 이전 및 실증 지원		
19		소공인특화지원센터 반부장 소공인 패키지 지원	인프라지원팀
20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청년 소공인 패키지 지원	
21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시제품제작 지원	
22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소공인 IP-인증지원	
23	창업지원	민관 협력 AC 프로그램 운영	창업지원팀
24		창업 맞춤형 사업화/마케팅 지원	
25		IR경진대회 사업화/마케팅	
26		로컬크리에이터 지원	
27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운영(선택형사업)	

- 위 사업 목록 중 최대 **5개** 사업까지 지원 가능(당해년도 기준)
 - * 해당 사업목록은 신규사업 신설 및 기존사업 변경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2천만 원 이상** 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2천만 원 이상 사업에 추가 지원 불가 (**빨간색 표기**)
 - ex) A사업 선정(지원금 2천만원) → B사업(지원금 3천만원) 신청 불가, C사업(지원금 5백만원) 신청 가능
- 당해연도 기준 동일 사업에 **1회만** 수혜 가능
 - ex) 상반기 A사업 선정 → 하반기 A사업 신청 불가 / 미선정 시 신청 가능

□ 사업신청 및 선정

- 선정평가를 통해 기업이 신청한 지원금액 및 지원범위 등이 조정될 수 있음
- 서류 보완 요청 시, 일정 기한 내 보완되지 않을 경우 평가에 제외될 수 있음
 - ※ 이외 필수제출서류가 누락되거나 식별 불가능한 경우, 허위 등 수정 불가능할 경우 평가 제외될 수 있음
- 신청서 및 제출 서류의 내용이 허위 또는 거짓으로 판명되거나, 기한 내 협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및 참여 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 선정 취소됨
 - ※ 상기 외에도 지원금의 부정 청구 또는 부정 이익이 발생한 경우, 「공공 재정 부정 청구 금지 및 부당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재 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음
- 진흥원 및 유관기관으로부터 동일한 지원을 받은 경우 선정취소 및 제재조치됨
 - ex) □□기관에서 A제품의 목업a를 지원받고 ▲▲기관에서 동일한 A제품의 목업a를 지원받는 경우
- 선정 후 실사를 통해 사업장 소재지 및 제출 서류 내용을 대조하여 검증할 예정이며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 및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 사업 수행 중 혹은 수행 완료 이후에도 지원자격 미충족으로 밝혀질 시, 지원 취소 및 지원금 미지급
- 협약기간 동안 사업 공고 내 명시된 지원 자격 조건을 상실할 경우 지원 취소
 - ※ 협약 기간 내 관외 지역 이전 및 (입주 대상 사업의 경우) 입주시설 외로 이전 시 지원 취소
- 이유 불문(사이트 오류 등) 마감 시간 이후 접수된 신청서는 평가에서 제외됨

□ 지원금 집행

- 지원금 및 기업부담금 등 모든 사업비는 부가가치세와 국내외 송금수수료 지원 불가
- 사업비는 반드시 협약 기간 내 집행해야 하며, 협약 기간 이전 혹은 이후 집행 건은 모두 불인정

□ 사업수행

- 사업수행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하거나 완료·정산보고서 등 기타 관련 자료 제출에 불응한 경우 제재 받을 수 있음
- 진흥원 승인(통보) 없이 무단으로 사업을 변경하여 수행한 경우 해당 금액 환수
 - ex) A제품을 목업 5개 제작하기로 하였으나, 사전승인 없이 3개만 제작한 경우 or PCB를 제작한 경우
- 사업 결과물 및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를 허위로 제출·보고한 경우 참여 제한 및 지원금 환수

☞ **공고문에 정하지 아니한 내용은 진흥원 내규 및 안내사항(담당자 이메일, 구두공지)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함**

별첨2

참여제한 및 지원금 회수대상 제재등급

참여제한 및 지원금 회수대상 제재등급

구 분	제재 및 환수 사유	제재 및 환수기준	
		참여제한	지원금 환수
부정 수급	<input type="checkbox"/> 부정한 방법(타기관 중복수혜 등)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	3년	전액 환수
중단 · 실패	<input type="checkbox"/> 수행결과가 극히 불량하거나 불성실하게 수행되어 중단, 실패한 경우	3년	전액 환수
	<input type="checkbox"/> 지원기업 부도, 폐업, 대표자 사망 등 중단, 실패 등의 귀책사유가 해당 기업에 없을 경우	면제	집행잔액 환수
	<input type="checkbox"/> 협약 이후 신청 및 선정자격에 만족하지 않음이 확인된 경우	2년	전액 환수
포기	<input type="checkbox"/> 정당한 사유로 사업 수행을 포기하는 경우 ○ 관련 증빙 제출 필요	면제	전액 환수
	<input type="checkbox"/> 부정당한 사유로 사업 수행을 포기하는 경우	경고	전액 환수
사업비 집행	<input type="checkbox"/> 협약기간 내 단순 착오, 지침 미숙지 등으로 사업비를 사용용도 외로 집행한 경우		
	○ 협약기간 내 사용금액 복원	주의	해당없음
	○ 협약기간 내 사용금액 미복원	경고	해당금액 환수
	<input type="checkbox"/> 협약기간 종료이후 사업비 집행한 경우	경고	해당금액 환수
협약 위배	<input type="checkbox"/> 사업 결과물 및 지출증빙자료 등을 허위로 제출·보고한 경우	3년	전액 환수
	<input type="checkbox"/> 협약서상 의무사항 이행 및 제 규정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 이행명령에 불응한 경우	2년	해당금액 환수
	<input type="checkbox"/> 정당한 사유 없이 진흥원의 점검요구, 보고서 제출 등을 지체 또는 불응한 경우	경고	해당 없음
	<input type="checkbox"/> 진흥원 승인(통보) 없이 무단으로 사업 변경하여 수행한 경우 ○ 중간점검, 완료평가 결과(물)에 따라 필요시 해당 금액 환수	경고	해당없음 (필요시환수)

- * 참여제한 및 환수에 대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의 경우 사업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 사업비 환수대상일 경우 지원금 전액이 반납될 때까지 참여제한 기간이 연장됨
- * 연간 경고 2회 = 참여제한 1년, * 연간 주의 2회 = 경고 1회
※ 경고 및 주의는 제재조치 통보일로부터 1년간 적용함
- * 참여제한 시작일은 진흥원의 제재조치 통보일로 함
- * 참여제한은 진흥원에서 시행하는 모든 지원사업에 대해 적용함
- * 지원금 횡령, 편취, 유용한 경우, 「공공재정환수법」의 방법과 절차를 준용
- * 제재 및 환수 사유가 확인된 시점에 2가지 이상 적용되는 경우, 더 높은 수위의 제재 및 환수 기준을 적용

별첨3

사업지원 제외업종 총괄표

표준산업분류	업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증개업
46107 중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증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16, 46417 중	모피제품 도매업 *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한약국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증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122 중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58211, 58212, 58219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증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분양, 임대 활동이 포함 * 단, 부동산관리업(6821),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증개 및 대리업(6822)은 신청가능 -부동산관리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주거용·비주거용 부동산관리) -부동산 증개 및 대리업: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표준산업분류	업종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31	수익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7533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예: 탐정업, 흥신소 등)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 안마원(96122)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 가능(통계청 기준)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 단, 골프연습장(91136), 스크린골프연습장(91136)은 지원가능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21 중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91241 중	복권 판매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 가능 -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 임대차계약서 또는 등기부등본 징구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업종